발신번호 변작방지 및 번호 사전 등록 동의서

(이하 “서비스 이용자”라 함)은 엠제이소프트(이하 “서비스 제공자”라 함)의 문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동의 한다.

제1조((목적)

정부기관(미래창조과학부)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에 관련 세부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 동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번호변작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이용하는 행위

2. 발신번호 :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제3조(“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발신번호는 이용 전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2. 통신사가 발행하는 통신서비스 증명원을 이용하여 사전 등록을 한다.

3. 사전 등록한 발신번호 이외의 다른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안된다.

4. “서비스 이용자”는 번호변작으로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이용정지)

1. “서비스 이용자”가 발송한 문자가 다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할수 있다.

1)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관련 기관에서 번호 변작 등의

사유로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2)전송된 메시지가 번호변작으로 판단되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송 중지 요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송한 경우

2.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고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1. “서비스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한다.

1)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번호변작을 한 문자를 전송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관련기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3회 이상 이용정지 또는 번호변작 전송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2. 다만,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의 해지에 대해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번호변작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관련 자료 제공을 위해 발신번호 사전 등록한 이력 및 차단한 통신 이력을 최소6개월간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서비스 이용자”

주소 :

상호 : (인)

직책 :

성명 : (서명)

전화번호 : 이동전화번호 :

E-mail :

사전등록이 필요한 발신번호.

|  |  |  |  |
| --- | --- | --- | --- |
|  | 보내는사람 전화번호 |  | 보내는사람 전화번호 |
| 1 |  | 6 |  |
| 2 |  | 7 |  |
| 3 |  | 8 |  |
| 4 |  | 9 |  |
| 5 |  | 10 |  |

\*\*\* 첨부서류 미제출시 발신번호 등록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첨부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림)
2.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회신번호

팩스번호 : 053-744-1120, 이메일주소 : 1000y3@naver.com